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통일조정 대상업체 대표이사 귀하 (경유)

제목 엠파글리플로진-메트포르민 복합제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

- 1. 관련 : 의약품허가총괄과-3390호('25.06.05.)
- 2. 우리 처(의약품허가총괄과)는 의약품 제조판매(수입) 품목 중 '엠파글리플로진-메트 포르민 복합제'에 대한 안전성·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(안)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통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- 3.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엠파글리플로진 -메트포르민 복합제' 품목의 허가(신고)사항 중 효능효과,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'25.10.21.자로 변경토록 명령하니, 당해 업체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 - 가. 변경명령 사항을 업체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게재할 것 (단.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)
 - 나. 종이 허가증인 경우
 - 해당품목 품목허가증(또는 신고필증) 원본 뒷면(변경 및 처분사항 등)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할 것

변경 및 처분사항 등		
년 월 일	내 용	
2025.10.21.	효능효과, 사용상의주의사항	<u>(의약품허가총괄과-호, 2025.07.21.</u>)
↑	↑	<u> </u>
변경일자	변경명령 항목 기재	변경명령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

- ※ 참고 :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(관련: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 심사 규정'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2호)
 - 품목허가증(또는 신고필증) 원본에 변경 명령한 내용(통일조정안)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·관리할 것
 - 다. 전자 허가증인 경우,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확인할 것

- 라.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"전문가를 위한 정보"가 기존 허가사항이 「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 제17조제2항제12회 하는 품목은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정보가 기재될 수 있도록 각 표 허가(신고)를 신청할 것
- 4. 동 기간 내에 상기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(https://nedrug.mfds.go.kr) '고시/공고/알림 > 의약품 허가승인 > 변경명령'참조
- 붙임 1. 엠파글리플로진-메트포르민 복합제(함량 12.5-500, 12.5-850, 12.5-1000, 5-500, 5-850. 5-1000 mg) 통일조정 대상품목.
 - 2. 엠파글리플로진-메트포르민 복합제(함량 12.5-500, 12.5-850, 12.5-1000, 5-500, 5-850, 5-1000 mg) 통일조정 허가사항 변경대비표.
 - 3. 엠파글리플로진-메트포르민 복합제(함량 12.5-500, 12.5-850, 12.5-1000, 5-500, 5-850, 5-1000 mg) 통일조정(안)(효능효과).
 - 4. 엠파글리플로진-메트포르민 복합제(함량 12.5-500. 12.5-850. 12.5-1000. 5-500. 5-850, 5-1000 mg) 통일조정(안)(사용상의주의사항). 끝.



의약품허가총 전결 2025. 7. 21.

심사원

홍수지

사무관

전보명

괄과장

김영주

협조자

시행 의약품허가총괄과-4457

(2025. 7. 21.)

접수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 / www.mfds.go.kr 우 28159

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

전화번호 043-719-2345

팩스번호 043-719-2300

/ sjhong09@korea.kr

/ 대국민 공개